



경기도의회 제393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기숙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경기도지사 제출
제58번

2026. 9. 7.(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경기도기숙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요구이유

- 가.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기숙사」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
- 나. 이에 기숙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기숙사 관리·운영

나. 사업 추진 연혁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도의회 보고/동의	비 고
1	'17.03. ~ '18.12.	경기도사회적경제협동조합		
2	'19.01. ~ '20.12.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3	'21.01. ~ '22.12.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20.10.14. (제347회 임시회)	
4	'23.01. ~ '24.12.	희망동지협동조합		
5	'25.01. ~ '26.12.	희망동지협동조합		

다.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 필 요 성 :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라. 위탁사무 내용

- 입사생 모집·선발, 입·퇴사 관리 및 생활지도

- 입사생 생활지원 및 교육·문화·진로·스포츠·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 기숙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 식당 운영 및 시설관리 ※ 상업시설(카페)은 수탁법인 직영 운영(독립채산제)
- 기숙사 운영 관련 예산·회계 관리 및 물품관리
- 입사생 민원 처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품질 관리
-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위·수탁 협약에서 정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 소요예산 : 1,646백만원 ※ 입사생부담금 738, 기타수입 51 별도

바. 위탁예정 기간 : '27. 1. 1. ~ '29. 12. 31.(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참가자격 : 공동수급 불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고, 기숙사의 운영 및 시설관리 유경험자인 법인, 기관(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모집공고 시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사자의 고용 유지 및 고용승계 하도록 명시하여 고용안정 도모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1) 부서자체 검토결과 :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입사생 생활지원 및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행정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2)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적정('26. 7. 31.)

자. 위탁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서호로 16 (옛 서울농생대 상록사)		
시설용도		교육연구시설(기숙사, 구내식당),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매점)		
연 면 적		5,909.88㎡	대지면적	16,660㎡
층 수		지하 1층, 지상 5층		
실구성	구 분	3인실	1인실(장애인실 3실 포함)	합계
	호실개수	91실	5실	96실
	수용인원	273인	5인	278인
	부대시설	각종 공용시설(헬스장, 세탁실, 독서실 등)		

3. 검토의견

■ 동의안 제출취지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기숙사'의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이며, 소요 예산은 약 1,646백만원임.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숙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

-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기숙사의 관리·운영 사무는 278명 규모의 입사생 모집·선발, 24시간 생활지도, 구내식당 운영, 건물 및 시설물 유지·안전관리, 진로·상

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들은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시설관리 및 생활지원 사무로서, 상시 시설관리 기술과 현장 중심의 생활지도 노하우가 집약적으로 요구됨. 따라서 해당 사무를 주거 복지 및 시설 운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운영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서의 법적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기준)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

■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필요성) 검토

- 경기도기숙사는 278명의 대학생 및 청년이 24시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상시 입·퇴사 관리 및 24시간 생활지도, 식당 운영, 진로·상담 프로그램 기획,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장 밀착형 관리와 신속한 민원 대응이 요구되는 복합 사무임.
- 해당 사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총 22명 규모의 운영 인력(관

장 1, 경영지원실 12, 생활지원실 9)을 공무원 정원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행정조직 비대화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순환보직 체계로는 24시간 밀착 생활지도 및 시설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반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운영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경우, 입사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진로·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고, 야간 사감 배치 및 24시간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시설 긴급 보수와 생활 불편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민간위탁 방식은 재위탁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운영 인력의 잦은 교체로 고용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으며, 그간 축적된 시설 관리 및 입사생 지도 관련 업무 노하우가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경기도기숙사 내 사감 및 주요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수탁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기숙사 관리·운영 사무는 연간 약 1,646백만원의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위탁사무인 만큼, 입사 청년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감 등 직원 채용 절차는 공공부문에 준하는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경기도송파학사와 같이 도 산하 공공기관(경기도미래세대재단 등)으로 위탁을 추진할 경우, 통합채용 등 공정 채용 시스템을 통해 채용 비리 의혹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확보와 함께 시설 운영 노하우를 장기적·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뚜렷한 장점이 있음.
- 결론적으로 경기도기숙사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지속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검증 체계 확립과 투명한 인사 관리·감독 대책이 철저히 수반되어야 하며, 향후 업무 노하우의 축적과 고용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기관위탁 전환 방안도 함께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발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기준)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위탁의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6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탁 사무 심의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고용·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6. 시·군 간 균형 분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협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제12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경기도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제4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